

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환경과)

의안번호	제199호
제 출 자	김경이 의원 외 15명(2023. 9. 26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상위법이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서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2. 1. 6.)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고,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로 제명 변경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용어 정비
- 다.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공무원 환경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9조)
- 마.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1조)
- 바. 홍보 및 포상과 관련한 조항 신설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환경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9. 26. ~ 10. 1.

4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(2022. 1. 6. 시행)됨에 따라,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
 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 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령 용어 정비(안 제1조,제2조) 「환경교육진흥법」→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안 제5조 : 전부개정 전 조례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」 제23조의 ‘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’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으나,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」 제12조의 ‘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’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.
 - 안 제6조에서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대상으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

교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여 대상의 폭을 넓힘.

-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**법 제25조제2항1)**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업무와 운영, 위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11조에서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, 사회환경교육기관, 그 밖의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.
- 안 제12조에서는 환경교육과 관련한 경비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
- 안 제14조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.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「환경교육의 활성화

1) 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지역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,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, 우리 구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참고자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환경교육진흥법</u>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<u>기여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<u>환경교육진흥법</u>」 제2조에서 정의하는 <u>바에 따른다</u>.</p> <p>제3조(책무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모든 국민</u>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성북구</u>(이하 “<u>성북구</u>”라</p>	<p><u>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바지함</u>-----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「<u>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(이하 “<u>법</u>” 이라 한다) 제2조-----.</p> <p>제3조(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 성북구민</u>----- ----- ----- <u>성북구</u>-----</p>

한다)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5. (생략)

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자문)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 기본 조례」 제23조의 서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환경교육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교육계획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환경교육계획-----
--
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환경교육계획-----
-----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 -----
반영하도록 협조를 -----.

제5조(위원회의 자문) -----
----- 환경교육계획-----
----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」

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.

제6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<신 설>

2.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<신 설>

3. 환경교육 담당 교원·담당직원·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

4.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5. (생략)

6.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

7. 환경체험센터 설치·운영
<신 설>

8. (생략)

9.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

10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

제12조의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6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
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
3.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-----
--

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<삭 제>

5. ----- 자료-----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8. 그 밖에 학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7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정한 사항
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
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
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추진한다.

1. 2. (생략)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
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(생략)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
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
화) ① (생략)
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
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
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
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
한다.

제9조(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
등)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
의 환경교육을 체계적·효율적
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
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
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

----- 추진할
수 있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양성
및 활용
4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
환경교육기관-----
5. (현행과 같음)
6. -----
----- 구청장이 인정
하는 -----

제8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
화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
하며,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
청할 경우 적극 협조---

제9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
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
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
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
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2.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
3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
4. 지역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

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·

제10조(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 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
2.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
3.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신 설>

1. 환경교육교재,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

2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
3.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

4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

5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
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과 제7조의 사항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, 사회환경교육기관,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12조(경비지원 및 보조)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

제11조(실비지급 등)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,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한 홍보물 제공

2.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, 장소 등 제공
3.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을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실비지급 등) ① 환경교육 업무-----

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 환경 관련 -----

 -----.
- ③ 환경 분야 -----

 -----.

제14조(홍보 및 포상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관별·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

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
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
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
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